

【 2016대비 법무사 1차 가족관계법 기본강의 계획서】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대비 가족관계법 기본강의(저녁반)			강의계획서
일정 2015.12.15(화) ~ 2015.12.23.(수) / 총 7회			
시간 저녁 : 19:00 ~ 22:30			
강사	이 성 우	교재	1. 주교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학사, 김지후편저) 2. 부교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예규·선례 정리 (법학사, 김지후편저) 3. 부교재 : 실무사례 및 서류에 대한 유인물 (강사제공)
학 습 목 표			

1. 철저한 조문 위주의 강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과목은 타 과목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적은 반면 실제의 시험에 있어서 정답을 선별해 내기에 많이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겠지요.

가족관계법 시험의 지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 조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칫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규와 선례는 기본이 되는 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기본서를 공부하다보면 해설내용에만 집중한 나머지 조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기도 전에 인테리어 생각에만 집중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1순환 가족관계법 강의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문 속지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으로 기초를 다지는 것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기억학습법

수험생들이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수년간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전에 공부한 내용이 시험장에서 생각 날리는 만무합니다.

다만 반복학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희미한 기억들을 살려가면서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 내야겠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암기법을 선택해야 겠지요.

글자로 암기한 내용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좀처럼 전체의 내용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번 1순환 강의에서는 모든 상황을 수험생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상화 시키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렷하지 못한 기억들이 순환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암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016대비 법무사 1차 가족관계법 기본강의 계획서】

* 강의진도표

	날짜	교재 진도	주요내용
1	12.15.(화)	제1편 총설 (p3~p68)	강의 OT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총설 및 개관 등록부 등의 공개
2	12.16.(수)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p69~p129)	신고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정정) 신고서류 등의 점수, 심사, 수리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3	12.17.(목)	제2편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p130~p154)	자녀의 성과 본 출생신고 인지신고
4	12.18.(금)	제2편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p155~p180)	입양신고(민법 조문과 연계하여 절차숙지) 친양자입양신고(예규 제373호 정리) 혼인신고의 개요·요건 혼인신고의 기록 및 무효·취소
5	12.21.(월)	제2편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친권에관한신고 제9장 미성년후견에관한신고 (p181~p214)	이혼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에 관한 예규) 친권에 관한 신고(민법 조문과 연계하여 절차숙지) 미성년 후견에 관한 신고(새로 도입된 제도)
6	12.22.(화)	제10장 사망신고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 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득상에관한신고 제3편 국제등록사무 (p215~p265)	사망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성·본 변경신고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 국제등록사무 (국제등록사무처리, 국제결혼·이혼, 국제입양·파양)
7	12.23.(수) 야간	제4편 등록부의 정정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6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7편 별칙, 과태료 (p269~p327)	등록부의 정정대상과 정정사유 신청 및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개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불복절차, 별칙, 과태료